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등이 중대한 범법행위 등 수용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서 격리하던 것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10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됨에 따라 격리 연장 시에도 담당 의사의 의견에 따라서 가능하도록 하고 격리 시 작성하는 보호원부에 담당 의사의 소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이 준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등 미비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담당 의사 의견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 격리 연장 조치 가능 등(안

제7조의3제2항, 제7조의3제5항제4호 및 제9호 개정)

-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피치료감호자등을 격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격리 연장 시에도 담당 의사의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함.
- 2) 격리하는 경우 보호원부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을 작성하도록 한 규정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작성하도록 함.

나.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 규정 정비(안 제19조제5호 신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중료 취소,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 등을 심사·결정할 수 있음에도 결정서 작성 근거 규정이 없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함.

다.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4호 및 제9호 중 “전문의”를 각각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로 한다.

제1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도 법 제37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경우

제32조제7항 단서 중 “「정신보건법」 제21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다른 법령의 준용)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7조의3(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 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 만,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정신 건강의학과 <u>전문의</u> 의 의견에 따 라 특히 계속하여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 -----, -- ----- ----- <u>전문의 또는 담당 의</u> <u>사</u>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 감호자등에게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 보존 하여야 한다.	⑤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호조치에 대한 정신건강의 학과 <u>전문의</u> 의 소견	4. ----- -- <u>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u>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한 경 우에는 그 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연장에 대한 정신건강의	9. ----- ----- -----

학과 전문의의 소견

10. (생 략)

⑥ (생 략)

제19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결정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기명·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32조(치료비용의 국가부담) ①
~ ⑥ (생 략)
⑦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
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치료행위
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용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
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
에서 신청인 또는 그 보호의무
자(「정신보건법」 제21조에 따

--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

10.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회의 결정)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도 법 제37조제3항 각 호
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경우

제32조(치료비용의 국가부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른 보호의무자를 말한다)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치료 비용은 국가가 지급하는 비용에서 제외한다. ⑧ (생 략) <u><신 설></u>	<u>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u>----- ----- -----. ⑧ (현행과 같음) <u>제32조의2(다른 법령의 준용) 이</u> <u>영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에 규</u> <u>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u> <u>그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범</u> <u>위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u> <u>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u> <u>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u> <u>시행령」을 준용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치료처우과	
연 락 처	02-2110-3334